

專門職種의 社會的 責任 限界

医療법를상식을 다루는 마당에 불쑥 建築土事務所의 등록취소사건의 예를 든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는 医療法상의 病院등의 業務停止나 医師에 대한 자격정지의 경우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의료인의 권익보호와 관련해서 여기서 사례를 통해 이를 비교해 보고 싶어서이다.

지금 세계적 추세는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등 專門職의 사회적 책임을 엄격히 추구하고 이에 따라 사소한 과실에 대해서도 그 법적책임을 지우게 하는 경향에 있고 특히 医師를 중심으로 하는 医療人에 대한 공공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법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의료인의 사회에 대한 책임이 무거울수록 한편으로 그들의 신분의 법적보장은 절실히 지는 것이다.

먼저 1984. 9. 11 대법원이 선고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의 취소청구사건을 소개해 보자.

이 사건 행정소송의 원고 K건축사는 서울도봉구청관내에서 건축설계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건축사인데 원고가 설계감리한 서울도봉구 상계동의 R소유건물의 건축에 있어 그 건축허가 내용보다 건폐율, 지층면적, 건물높이, 지층노출이 모두 초과되어 건축법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도봉구청장은 서울시장에게 설계감리를 한 건축사인 원고에게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에서는 도봉구청장의 행정처분의뢰를 받고서 서류검토를 한 결과 위법사실을 확인하는 원고K의 확인서의 원고K

의 이름아래 날인이 없고 날인거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담당직원은 그 위법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K씨의 건축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으나 K씨는 없고 그 사무원 B씨만 있어서 그에게 K씨의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여 그 확인서에 날인을 한 다음 그 확인서와 그 밖의 서류들을 종합해서 그것을 근거로 건축사법 제28조를 적용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원고K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이 그 처분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聽問을 한 바도 없고 또 聽問을 위하여 원고를 소환하지도 아니하였으니 聆問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그 처분은 違法이므로 取消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그 기각판결의 이유인즉 이렇다. 『건축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건축사무소의 개설자가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건축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건축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폐쇄처분에 관한 전설부훈령 제9조에는 건축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축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였고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관계행정청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건축사를 사전에 청문하도록 한 법제도의 취지는 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건축사사무소의 기존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등록취소 사유에 대하여 당해건축사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감안하고 처분의 신중성과 적정성을 기하려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관계행정청이 이와 같은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고 설사 건축사법 제28조 소정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한 이전 등록취소처분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하였다.

원래 대법원은 앞에서 본 건설부훈령같은 것은 행정판정을 내부적으로 규율하는 것일뿐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하여 왔으면서도 懲戒处分인 이 등록취소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訓令위반을 들어 그 처분을 취소해 버린 것이다.

건축사법에 의하면 건축사의 면허취소 절차에 관해서 『건설부장관은 건축사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建築士에 대하여 聽問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 절차에서는 聽問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원래 선진외국에서는 모두 行政節次法 이라는 법이 있어서 면허취소, 업무정지등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려면 裁判節次 비슷한 절차를 미리 취해서 그 처분을 받게 될 사람에게 충분한 防禦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절차의 대표적인 것이 聽問 즉 당사자가 직접 그 관청에 나와서 그의 주장을 충분히 설명하게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케 한 다음에 그것들을 종합하여 行政処分을 하게 되어 있는 터이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가 医療機關 또는 医療人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자.

医療法에 보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医療機關에 일정한 위반사유가 있으면 의료업의 정지, 개설허가의 취소,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였고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인이 품위손상 또는 医療法에 의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었고 그러한 절차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바꾸어 말하면 그 당사자에게 聽問節次 그 밖의 변명의 기회를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보건사회부내의 내부훈령의 유무에 불구하고 오늘날 국민의 권리, 자격을 박탈 또는 제한하고 행정처분제도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그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공인회계사의 예를 들어 보면 재무부장관은 공인회계사에게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아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거의 재판절차와 유사하게 권리보장이 되어 있으며 변호사의 경우는 역시 변호사법에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비롯하여 그 징계절차는 검사징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다시 검사징계법은 형사소송법의 일부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서 바로 대법원에 직결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터이다.

이렇게 볼때 현행법제도에서 보면 医師에 대하여는 建築士보다도 그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辨理士, 公認會計士나 辯護士의 그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아니하는 형편에 있다.

의료인들은 입버릇처럼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고 불평을 하면서도 이처럼 제도적인 학대를 시정하려들지 않고 있는것 같다.